

후원회 관리·운영규정

제 정 : 2022. 10. 5.
한국해양재단 규정 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해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후원회의 가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원회원”이란 재단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재단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후원회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후원금품”이란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하는 현금, 부동산,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이 후원회는 “한국해양재단 후원회(오셔널스)”라 한다.

제4조(후원회의 가입) ①재단의 목적 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 ②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지”의 후원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한 기부금품을 납입하였을 때 후원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제5조(후원회원 존속기간) 제4조에 따라 후원회 가입절차를 마친 후원회원은 후원금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후원회원을 유지한다.

제6조(후원금품의 종류) 후원금품은 후원회원의 사용용도 지정 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후원금 : 후원회원이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
2. 지정후원금 : 후원회원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3. 수증 부동산 : 후원회원이 기증한 부동산
4. 수증 물품 : 후원회원이 기증한 물품

제7조(후원금품의 납입 등) ①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후원금을 일시납 또는 분할납으로 납입할 수 있다.

1. 초·중·고 학생 : 연간 5천원 이상
2. 대학생 및 일반 개인 : 연간 3만원, 5만원, 10만원 이상
3. 법인 : 연간 1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이상

②후원금은 후원회원이 재단이 정한 은행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재단은 후원회원이 납입한 후원금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익명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부동산 또는 물품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재단 이사장과 제1항 내지 3항을 준용하여 후원방법을 협의 결정한다.

제8조(후원회원의 권리)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재단의 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의견 개진
2. 제9조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9조(후원회원의 예우) 재단 이사장은 후원회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손비 인정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개인 및 법인)
2. 재단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게시 및 관리(개인 및 법인)
3. 매년 재단이 발간하는 소식지 등 제공(개인 및 법인)
4. 해양문화탐방 등 각종 재단 주관행사 안내(개인 및 법인)
5. 재단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 후원 단체명 기재(법인)
6. 사진, 문학 자료 등 재단 소유 저작권 사용(법인)
7. 재단 홈페이지에 후원단체 동정 공지(법인)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의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